

##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제 목	2017학년도 2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일시	2017.01.13.(금) 14:00-18:00
		장소	K동 206호
안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17학년도 장학금 지급계획 설명</li> <li>2. 2017학년도 가예산 자료 전달</li> <li>3. 등록금심의위원회 사전요청자료에 대한 질의응답</li> </ol>		
주요내용	<p>- <b>위원장</b> : 금일 외부위원은 경영하는 회사 문제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줄 것을 통보해옴.</p> <p><b>[외부위원 위촉]</b></p> <p>- <b>위원장</b> : 외부위원 결정에 관하여 1차회의에서 오해가 있었지만, 외부위원 임면은 총장 권한이며 학생위원이 추천한 인사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함.</p> <p>- <b>(서울)총학생회장</b> :</p> <p>①2016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었던 사안임을 밝힘.                  ②'등심위 개최 전 외부위원 선정을 위해 협의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바뀌어도 이행되어야 할 부분임을 주장함.</p> <p>- <b>위원장</b> : 작년도 합의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올해 등심위를 운영하는 위원장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는 등심위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등심위 위원장으로서 그 권한에 따라 운영할 것임을 밝힘.</p> <p>- <b>(서울)부총학생회장</b> : 등심위 합의문은 연속성이 있는 것임을 주장함.</p> <p><b>[회의록]</b></p> <p>- <b>(서울)총학생회장</b> : ①1차 회의 때 분명히 작년보다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합의했음을 상기시키고, 학교로부터 받은 회의록은 작년보다 내용이 더 부실했음을 밝힘.                  ②사전에 자료를 받지 못하여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기에 1월 중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4회 정도 추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제안함.</p> <p>- <b>위원장</b> : ①1월에 1회 2월초에 1회 추가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에게 의견을 묻고 전원이 이에 동의함으로 합의하고,</p>		

②2월초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로 일정을 잡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학생위원 요청자료]**

- (서울)총학생회장 : 사전요청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에 신뢰할 수 없다 함.

- 사무처장 : 자료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위원장이 사전에 학생위원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학생위원들이 학교위원으로부터 양해를 바란다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학생위원이 요청한 모든 자료는 문서 형식으로 전해줄 것을 요청함.

- 사무처장 : 학생위원들의 요청자료 중, 법인의 금융상품별 투자내역 등은 등심위 안건이 아니라고 설명함

- (서울)총학생회장 : 그 부분은 2015년도에도 논해졌고, 법인전입금이 9억 원으로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지출 해왔기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임을 주장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1차 회의 때 이 부분의 요청자료에 대해서는 2차 회의에서 PPT로 학교 측의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서면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음을 밝힘.

- 사무처장 : 등심위에서 논할 사안은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큰 사업과 관련된 사항임을 주장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문제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관, 항, 목 전부 등심위에서 자세하게 논해야 함을 주장함.

- 사무처장 : 그 부분은 학교의 경영간섭이라고 생각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가예산을 보고) 법인전입금이 왜 또 9억원으로 책정됐는지,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또 지출해야 하는지 질의함.

- 사무처장 : 법인에서 결산이 나오지 않았고,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증액하여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자구노력에 대한 자료를 3차 회의 때 제출해줄 것을 요청함.

- 사무처장 : 그 부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안에서 더 큰 부분들에 대한 논의 후 가감 조정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함

- 위원장 : 차후 회의에 재무팀장이 출석하여 설명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본교 출신이 모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다시 한번 입학금을 내야하는 이유를 질의함

- 위원장 : 추후 논의과정에서 답변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외국인 학생에 대한 등록금 자율화가 시행되었지만, 국내학생들과는 그 기초를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함.

- (서울)총학생회장 : 왜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이 집행되었는지 질의함.

- 위원장 :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당해 학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개인에게 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고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왜 비용이 집행되었는지 질의함.

- (서울)총학생회장 : 소송비용 부분에 관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감가상각비]

- (서울)총학생회장 : 2016년 12월 기획처장이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108억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어 적립되었고, 건설가계정으로 46억이 배정되었으며, 건축물 관리비 중에서 각 건물 시설유지보수비와 시설개선공사비로 110억이 포함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

- **위원장** : 당시 '신축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적립금에서 쓰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교비에서 쓰겠다.' 라고 설명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①그때 합의한 사항은, 감가상각비만큼 적립된 건축적립금의 사용용도는 신축에 한정하였던 것이라고 함.

②적립금과 예금이자도 교비회계에서 쌓아온 것이고, 적립한 목적에 해당하는 지출은 당연히 적립금에서 인출하여야 한다고 말함.

③적립금 인출이 되지 않은 최소 141억원에서 최대 156억원이 등록금 인하요이며, 전년대비 7.46% ~ 8.26%라고 주장함.

④교내 각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근거자료를 요구함.

- **위원장** : 적립금 및 소송비용 명세에 대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무팀장이 설명하기로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감가상각비 명분으로 적립금을 적립하였으므로 그 인출 문제에 대하여는 기획처장인 위원장이 답변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위원장** : 다음 회의에서 답변하기로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교내 각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근거 자료와 계정별 원장을 요구함

- **위원장** : 재무팀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겠다고 함

#### [대학구조개혁평가]

- **(서울)총학생회장** :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의 변경된 사항을 설명하고 법인전입금, 교원확보, 민주적 소통 등의 지표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해 질의함. 또한 교육비 환원율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도 질의함.

- **위원장** : 차후 답변 하겠다고 함.

- **사무처장**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로서, 구체적인 전임교원확보율, 등록금환원율 문제는 교학협의회(교무학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전임교원확보와 교육환경개선, 등록금환원율 등의 지표는 등록금으로 구성된 예산과 밀접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서울)총학생회장 :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임교원충원을 70%, 교육비환원을 150%를 합의문에 적시할 것을 요구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이 수치는 교육권 보장을 위한 최소치임을 주장함.

- (서울)총학생회장 : SCI/SCOPUS 학술지 등 전임교수 1인당 국제기준 논문수치가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연구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함.

- 학생처장 : 학교에서 국제기준 논문 등재 등을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인센티브 지급보다는 국제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학교당국이 적립금을 쌓기 시작한 시점과 최근 몇 년간 교육권보장에 인색한 모습에 학생들에게 신뢰가 너무 떨어졌기에 각종 지표의 목표를 적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함.

### [제2기숙사]

- (서울)총학생회장 : 제2기숙사의 홍보는 최첨단시설, 호텔식 기숙사로 했는데 실제로 복지시설은 전무하고, 사생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너무 많다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기숙사 내부의 학습실 계획은 카페테리아 형식의 열린 공간이 아닌, 도서관 열람실과 같이 방음시설이 갖추어진 온전하고 분리된 학습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함.

- (서울)총학생회장 : 제2기숙사 헬스장은 기존에 합의했던 후생복지시설이며, 기존에 체육관에 있었던 헬스장은 문화공간이므로 두 공간은 각각 운영되어야 함을 말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제2기숙사에 들어오는 헬스장은 기숙사생에게 무료인지 질의함.

- 사무처장 : 기숙사생, 학부생, 교직원 및 외부인에게는 차등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답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최신식 복지시설을 이용한다는 명목 하에 높은 기

숙사비를 내고 있는 사생들에게 헬스장 이용비를 또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기숙사생들에게도 요금을 징수 할 예정이라면, 헬스장 요금만큼 기숙사비 인하를 주장함.

- 학생처장 : 복지가 잘 되어있는 국가도 완전무상복지는 없으며, 일반학생들과 차별을 두어 혜택을 주는 것 또한 복지라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호텔식, 최신식 기숙사로 홍보된 제2기숙사에서 제공되는 복지시설이 없음을 지적함

- 사무처장 : 사생실 및 복도의 구조와 배치 등이 호텔식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호텔식이라는 표현에는 제반 서비스가 호텔식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함

#### [교직원 증원]

- (서울)총학생회장 : 교직원 증원 관련 학교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함.

- 사무처장 : 차기 회의에서 답변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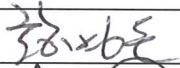







#### [기타안건]

- (서울)총학생회장 : 1월 안에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제공과 협의를 요청함.

- 사무처장 : 빠른 합의를 위해서는 요청자료 27가지 중 등심위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과 등심위 이후에도 계속 논의 할 수 있는 사안은 제외하고, 10~12가지 사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요청자료 모두가 등심위에 관련된 내용이며, 등심위 안건이 아닌 예를 질의함.

- 사무처장 : 교환학생, 국외 교류학점관련 자료는 등심위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부총학생회장 : 국제교류에 대한 학교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질의하며 자료를 요청함.</li> <li>- 위원장 : 다음 주까지 자료를 다 보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li> <li>- (서울)부총학생회장 : 지난 학기 왜 급작스레 수영장 이용시간이 줄었는지 질의함.</li> <li>- 사무처장 : 적자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함.</li> <li>- (서울)부총학생회장 : 수영장 운영에 감사를 어느 기관에서 받은 것인지 질의함.</li> <li>- 사무처장 : 법인 감사라고 함.</li> <li>- (서울)부총학생회장 : 수영장 관리에 관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li> <li>- (세종)총학생회장 : 1월 17일에 예정되어있는 3차회의는 신임 간부연수 준비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종에서 개최하기를 요구함.</li> <li>- 위원장 :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3차 등심위는(2016.1.17. 14:00) 세종캠퍼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함.</li> </ul>					
<p>협의 및 의결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금심의위원회를 1월에 1회(2017.1.20), 2월초(2017.2.3)에 1회 추가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 함.</li> <li>2. 3차회의는 1월 17일 14:00시에 세종캠퍼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함.</li> <li>3. 적립금, 소송비용, 법인전입금에 대한 내용을 4차회의(2017.01.20)에서 재무팀장이 설명하기로 함.</li> </ol>					
<p>참석위원</p>	<p>직위</p>	<p>성명</p>	<p>서명</p>	<p>직위</p>	<p>성명</p>	<p>서명</p>
	위원장	황 병 돈		위원	장 상 희	
	위원	이 선 우		위원	이 수 환	
	위원	전 성 표		위원	조 민 우	
	위원	정 교 범		위원	유 재 호	
	위원	심 재 익				
<p>참석현황</p>	<p>참석대상</p>	<p>9명</p>	<p>참석</p>	<p>8명</p>	<p>불참</p>	<p>1명</p>
<p>작성자</p>	<p>재무팀 간사 이승용</p>		<p>작성년월일</p>		<p>2017.01.18</p>	